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입주자 모집공고



■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린 견본주택을 운영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람고객은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10:00 ~ 17:00시에 **방문관람이 가능**하며, **당사 홈페이지(<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를 통해 분양 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사전서류검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하므로 해당자는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이며, 방문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 또는 방문 방식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견본주택 방문 안내

-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는 홈페이지(<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및 안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담직원 담당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담당자가 없으신 고객은 견본주택에서 상담직원을 배정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공급계약 시 일반고객의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홈페이지(<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고지된 관람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견본주택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전 자격확인 은 반드시 분양대행자교육을 수료한 청약상담직원 및 청약홈을 통하여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부동산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문의전화 : 051-861-7952 홈페이지 : 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홈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	--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국토교통부 특별공급관련 협조공문 주택기금과-1589(2020.02.28.시행), 주택기금과-3013(2018.05.01.시행)에 의거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대수를 산정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필요	다자녀 필요	신혼부부 필요	노부모부양 필요	생애최초 필요	1순위 필요	2순위 필요
청약통장	(6개월이상, 예치금)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O	O	O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시청역해모로센티아.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6억 이상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검수 (예비입주자 포함)	계약체결
일 정	11월 13일(월)	11월 14일(화)	11월 15일(수)	11월 21일(화)	11월 26일(일) ~ 12월 2일(토)	12월 4일(월) ~ 12월 6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내방접수 (당첨자 개별연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서류검수 및 계약자 방문시간 - 10:00 ~ 17:00(반드시 시간내에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건본주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주택 공급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49728호(2023.11.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동 총 376세대 중 일반분양 131세대
 [특별공급 23세대(일반[기관추천] 2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07	01	39.8900	39A	39.8900	23.8800	63.7700	27.8400	91.6100	18.3700	10	-	-	1	-	3	4	6	1
		02	59.7700A	59A	59.7700	20.5300	80.3000	41.7100	122.0100	27.5300	86	2	2	9	2	4	19	67	8
		03	59.8400B	59B	59.8400	21.6700	81.5100	41.7700	123.2800	27.5600	17	-	-	-	-	-	-	17	1
		04	74.8400	74	74.8400	25.0400	99.8800	52.2500	152.1300	34.4800	8	-	-	-	-	-	-	8	2
		05	84.8700A	84A	84.8700	28.0600	112.9300	59.2500	172.1800	39.1000	4	-	-	-	-	-	-	4	4
		06	84.8800B	84B	84.8800	29.0400	113.9200	59.2600	173.1800	39.1000	4	-	-	-	-	-	-	4	2
		07	84.8500C	84C	84.8500	29.6100	114.4600	59.2400	173.7000	39.0900	2	-	-	-	-	-	-	2	1
		합계											131	2	2	10	2	7	23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소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 표기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자정 기간 내 (입주시)			
										2024.04.15	2024.08.16	2024.12.16	2025.04.16	2025.08.18	2025.12.15				
39A	10	104동 7호라인	13-16f	1	109,100,000	180,300,000	289,400,000	10,000,000	1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86,820,000		
			9-12f	3	107,000,000	176,700,000	283,700,000	10,000,000	1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85,110,000	
			5-8f	3	104,800,000	173,200,000	278,000,000	10,000,000	1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83,400,000	
			4f	1	102,700,000	169,700,000	272,400,000	10,000,000	1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27,240,000	81,720,000	
			3f	1	100,600,000	166,100,000	266,700,000	10,000,000	1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26,670,000	80,010,000	
			2f	1	98,400,000	162,600,000	261,000,000	10,000,000	1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78,300,000		
59A	86	103동 (3호라인)	21-25f	2	196,500,000	324,500,000	521,000,000	10,000,000	4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17-20f	2	191,000,000	315,400,000	506,400,000	10,000,000	4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51,920,000	
			13-16f	2	187,300,000	309,400,000	496,700,000	10,000,000	3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149,010,000	
			9-12f	2	183,600,000	303,400,0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5-8f	2	180,000,000	297,200,000	477,200,000	10,000,000	3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143,160,000	
			4f	1	176,300,000	291,200,000	467,500,000	10,000,000	3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140,250,000	
			3f	1	172,600,000	285,100,000	457,700,000	10,000,000	3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137,310,000	
					2f	1	168,900,000	279,100,000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101동 (3,4,5호라인) 103동 (4호라인) 104동 (1,2,3호라인)	21-25f	1	194,500,000	321,400,000	515,900,000	10,000,000	4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154,770,000
					17-20f	6	189,100,000	312,300,000	501,400,000	10,000,000	4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150,420,000	
					13-16f	10	185,500,000	306,300,000	491,800,000	10,000,000	39,180,000	49,180,000	49,180,000	49,180,000	49,180,000	49,180,000	49,180,000	49,180,000	147,540,000
					9-12f	16	181,800,000	300,300,000	482,100,000	10,000,000	3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144,630,000
					5-8f	20	178,200,000	294,300,000	472,500,000	10,000,000	3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141,750,000
				4f	7	174,600,000	288,300,000	462,900,000	10,000,000	36,290,000	46,290,000	46,290,000	46,290,000	46,290,000	46,290,000	46,290,000	46,290,000	138,870,000	
				3f	7	170,900,000	282,300,000	453,200,000	10,000,000	3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135,960,000	
			2f	6	167,300,000	276,300,000	443,600,000	10,000,000	3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133,080,000			
59B	17	104동 (4호라인)	21-25f	1	197,500,000	326,200,000	523,700,000	10,000,000	4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157,110,000		
			17-20f	4	191,900,000	317,100,000	509,000,000	10,000,000	4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13-16f	2	188,200,000	311,000,000	499,200,000	10,000,000	3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149,760,000		
			9-12f	3	184,600,000	304,800,000	489,400,000	10,000,000	3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46,820,000		
			5-8f	4	180,900,000	298,700,000	479,600,000	10,000,000	37,960,000	47,960,000	47,960,000	47,960,000	47,960,000	47,960,000	47,960,000	47,960,000	143,880,000		
			4f	1	177,200,000	292,600,000	469,800,000	10,000,000	3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140,940,000		
			3f	1	173,500,000	286,500,000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2f	1	169,800,000	280,400,000	450,200,000	10,000,000	3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135,060,000			
74	8	101동 (1호라인) 103동 (5호라인)	17-20f	1	238,700,000	394,400,000	633,100,000	10,000,000	5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189,930,000		
			9-12f	1	229,500,000	379,200,000	608,700,000	10,000,000	5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182,610,000		
			4f	2	220,400,000	364,000,000	584,400,000	10,000,000	4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175,320,000		
			3f	2	215,800,000	356,400,000	572,200,000	10,000,000	4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171,660,000		
			2f	2	211,200,000	348,800,00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84A	4	102동(3,4호라인) 103동(1,2호라인)	2f	4	241,200,000	398,300,000	639,500,000	10,000,000	5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191,850,000			
84B	4	102동 (1,2호라인)	3f	2	256,000,000	422,800,000	678,800,000	10,000,000	5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203,640,000		
			2f	2	250,500,000	413,800,000	664,300,000	10,000,000	5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199,290,000		
84C	2	101동 (2호라인)	3f	1	262,300,000	433,200,000	695,500,000	10,000,000	5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208,650,000		
			2f	1	256,700,000	424,000,000	680,700,000	10,000,000	58,070,000	68,070,000	68,070,000	68,070,000	68,070,000	68,070,000	68,070,000	68,070,000	204,21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가를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단, 동별사용허가(부분사용준공) 임시사용승인(준공전 사용허가)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소명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39A	59A	59B	74	84A	84B	84C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장애인 부산광역시	-	2	-	-	-	-	-	2
	소계	-	2	-	-	-	-	-	2
다자녀특별공급		-	2	-	-	-	-	-	2
신혼부부특별공급		1	9	-	-	-	-	-	10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2	-	-	-	-	-	2
생애최초특별공급		3	4	-	-	-	-	-	7
합계		4	19	-	-	-	-	-	23

※ 본 아파트의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은 국토부 공문[주택기금과-1589(2020.02.28.시행)]에 의거 지역여건에 맞는 특별공급 세대수를 배분하여 접수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276 2116 1428">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대상자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함</p>								
청약자격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p>								
당첨자 선정방법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부동산원에 명단을 통지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추천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청약통장 구비여부</th> <th style="width: 40%;">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약통장 필요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p>			구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구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p>대상자</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함</p>
<p>청약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p>※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 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p> <p>※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p> <p>※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p>
<p>당첨자 선정방법</p>	<p>[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가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2.28.)]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0세대

<p>대상자</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p>								
<p>청약자격요건</p>	<p>-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p>-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p> <table border="1" data-bbox="304 810 2130 882">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주자모집공고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7.01.~ 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td> </tr> </table> <p>-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16호(2023.02.28.)]에 따름</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12.31.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12.31.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p>당첨자 선정방법</p>	<p>[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p> <p>-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p> <p>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p> <p>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p> <p>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p>								

	<p>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p>※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p>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p> <p>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또는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p>※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p>
<p>기타 예외사항</p>	<p>■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7,811,342원	7,622,057원~9,146,467원	8,040,493원~9,648,590원	8,701,640원~10,441,967원	9,362,787원~11,235,343원	10,023,934원~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9,113,233원	7,622,057원~10,670,878원	8,040,493원~11,256,689원	8,701,640원~12,182,295원	9,362,787원~13,107,900원	10,023,934원~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10,415,123원	9,146,468원~12,195,290원	9,648,591원~12,864,787원	10,441,968원~13,922,622원	11,235,344원~14,980,458원	12,028,721원~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 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통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당첨검수일 내 제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회사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 미날인, 팩스 인정 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직인 날인하여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또는 공고일 이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재표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세대

대상자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자</p>								
청약자격요건	<p>①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p> <p>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p> <p>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p>④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p> <table border="1" data-bbox="309 762 2128 834"> <thead> <tr> <th data-bbox="309 762 907 799">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data-bbox="913 762 1507 799">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 data-bbox="1514 762 2128 799">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804 907 834">07.01.~ 12.31.</td> <td data-bbox="913 804 1507 834">(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td> <td data-bbox="1514 804 2128 834">(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p>-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12.31.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12.31.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p>[소득기준 ▶ 거주지역 ▶ 추첨]</p> <p>-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p>-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p>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 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23.02.28.)]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 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우선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충족 기준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관련 기준사항 <table border="1" data-bbox="286 869 1951 127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충족(변경) 기한 및 사항</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한</th> <th>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청약예금 증액 (전용면적 : 작은 면적→ 큰 면적 변경)</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td> <td>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td> <td></td> </tr> <tr> <td>청약부금 예치금 충족(85㎡ 이하)</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td> <td>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td> <td>85㎡ 초과 주택 청약 불가</td> </tr> <tr> <td>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 (85㎡ 초과)</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td> <td>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td> <td></td> </tr> <tr> <td>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td> <td>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td> <td></td> </tr> <tr> <td>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td> <td>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td> <td>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 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 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당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충족(변경) 기한 및 사항		비 고	기 한	사 항	청약예금 증액 (전용면적 : 작은 면적→ 큰 면적 변경)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부금 예치금 충족(85㎡ 이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85㎡ 초과 주택 청약 불가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 (85㎡ 초과)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구 분	충족(변경) 기한 및 사항		비 고																								
	기 한	사 항																									
청약예금 증액 (전용면적 : 작은 면적→ 큰 면적 변경)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부금 예치금 충족(85㎡ 이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85㎡ 초과 주택 청약 불가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 (85㎡ 초과)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p>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1.13.(월) 청약Home : 09: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
일반 공급	1순위	2023.11.1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2순위	2023.11.15.(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이외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21.(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신청역해모로센티아.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21.(화) ~ 2023.11.30.(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APT 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1.2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및 울산광역시, 기타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홈페이지(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VI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6.(일) ~ 2023.12.02.(토) (7일간, 10:00 ~ 17:00)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 중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 경과 후 폐기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기간 확인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 명시_기타지역 접수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 증명서류	해당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본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주 전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주 전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에 비치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단, 상기 5개년도 서류 중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부동산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 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제출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산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공 점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12.04.(월) ~ 2023.12.06.(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_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수입인지(인지세)-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BNK부산은행	113-2017-3372-04	연산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1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엘리베이터 홀, 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 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인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계약자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 입주예정월 : 2026년 6월 예정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59A	19,000,000	1,900,000	17,100,000
59B	22,700,000	2,270,000	20,430,000
74	23,200,000	2,320,000	20,880,000
84A	22,800,000	2,280,000	20,520,000
84B	25,000,000	2,500,000	22,500,000
84C	24,800,000	2,480,000	22,320,000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업그레이드, 추가 가구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부산은행	101-2084-5011-07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 시 기계설비(스프링클러, 환기구, 에어컨 냉매배관 등),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 후 소방시설 변경,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수전과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비확장)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품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 창호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문 사이스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가구 및 발코니 선반 사이즈 및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커튼박스 깊이 및 폭, 우물천장 깊이 및 폭 등) 및 디자인(커튼박스, 우물천정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냉매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시공 품목
문	목창호 문틀, 문짝, 문선, 손잡이,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바닥	마루, 바닥타일(타일붙임몰탈 포함), 디딤판,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바닥도장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아트월, 벽타일, 도장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초배포함), 단천장, 물딩, 도장 및 기타 천장재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욕실	벽, 바닥타일, 천장재, 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위생기구 (양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부부욕실), 욕조하부틀, 코킹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욕실 조명(욕실/샤워부스 등), 스위치, 콘센트
주방가구	주방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주방액세서리 일체), 가전류(자동식소화기 포함), 벽 마감일체, 수전, 다용도실(주방발코니) 가구 및 선반일체	소방검사관련 시설, 주방배기덕트, 설비배관
조명기구	조명기구(직부등)	배관, 배선, 조명기구(매입등/다운라이트), 스위치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도어 및 선반포함),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선반 포함), 복도장, 침실2 불박이장, 파우더장(상판, 조명 포함)외 가구 액세서리 일체	-
창호	목창호(가틀 제외), 실외기실 도어	목창호 가틀, 내부 분합 플라스틱 창호
옵션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외)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안방), 거실 월패드, 콘센트, 소방 감지기, 동체감지기(해당세대), 통합수구(콘센트+통신모듈+TV), 실외기 단자

■ 마이너스(기본선택품목) 옵션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39	59A	59B	74	84A	84B	84C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 금액	-	19,000,000	20,000,000	25,000,000	29,000,000	29,000,000	30,00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기본선택품목)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 분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39A	1안	거실+침실1	삼성 / LG	4,000,000	400,000	3,600,000	
59A,59B	1안	거실+침실1		4,250,000	425,000	3,825,000	발코니 확장 또는 특화평면 선택시 선택가능
	2안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80,000	678,000	6,102,000	
74	1안	거실+침실1		4,270,000	427,000	3,843,000	
	2안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450,000	745,000	6,705,000	
84A,84B,84C	1안	거실+침실1		4,510,000	451,000	4,059,000	
	2안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460,000	746,000	6,714,000	

(2)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특화평면 전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 분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59A	특화평면 전용 시스템 에어컨	거실+와이드키친+침실1+침실3	삼성 / LG	6,780,000	678,000	6,102,000	
59B		거실+침실1+와이드룸		5,660,000	566,000	5,094,000	

※ 시스템 에어컨 전실 선택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한 옵션과 특화평면 선택시 가능한 옵션은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옵션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옵션1(거실/안방) : 거실, 침실1(안방) 시스템에어컨 제공 / 옵션2(전체실) : 거실, 침실1(안방), 침실2,3 시스템에어컨 제공

※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는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시공되지 않으며, 옵션금액은 에어컨 매립배관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1 선택을 하더라도 침실2,3에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은 제공됩니다. 단 추후 추가설치시 실내기 추가에 따른 실외기 교체 또는 추가 실외기 설치로 인한 문제점(공간협소, 운전소음, 배관 연장에 따른 가스누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39타입은 거실, 침실1, 39타입을 제외한 전타입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에어컨 냉매매립 배관만 시공됩니다.

※ 특화평면 적용 세대는 냉매배관 위치가 변경, 미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평형에 맞는 용량제품이 설치됩니다.
- 옵션시 제안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제조사의 도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선택옵션에 따라 실내기 수량, 설치위치, 냉방용량 등이 평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 내에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설치의 경우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배관으로 인한 환기디퓨저 위치,스프링클러 위치,전등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천장 마감공사 전(前)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선택품목

● 가구/마감재 추가선택 품목(발코니 확장시)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내 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마감재 업그레이드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주방/복도 바닥 마감재 업그레이드(강마루 → 포세린타일)	59A	700,000	70,000	630,000	
		59B	850,000	85,000	765,000	
		74	990,000	99,000	891,000	
		84A,B,C	1,110,000	111,000	999,000	
	거실 아트월 업그레이드(400*800 포세린 타일 → 1,200*1,500 세라믹스톤)	59A	3,800,000	380,000	3,420,000	
		59B	6,100,000	610,000	5,490,000	
		74,84C	4,300,000	430,000	3,870,000	
		84A,B	4,400,000	440,000	3,960,000	
	주방 상판 및 벽면 마감재 업그레이드(인조대리석 + 타일 → 세라믹스톤)	59A,B,74	3,000,000	300,000	2,700,000	
		84A,B,C	3,900,000	390,000	3,510,000	
	침실1(안방) 슬라이딩 도어 붙박이장 + 스마트 지문 인식락	59A,B	3,450,000	345,000	3,105,000	
		74	4,850,000	485,000	4,365,000	
		84A	5,500,000	550,000	4,950,000	
		84B,C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 복도장	84B,C	3,200,000	320,000	2,880,000	
조명 업그레이드(거실 우물천정 + 간접조명, 주방 상부장 하부라인 조명, 주방 식탁 팬던트 등)	59A,B	1,000,000	100,000	900,000		
	74,84A,B,C	1,250,000	125,000	1,125,000		

● 가구/마감재 추가선택 품목(특화평면 전용)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내 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특화평면 전용 마감재 업그레이드	59타입 특화평면 거실/주방/복도 바닥 마감재 업그레이드(강마루 → 포세린타일)	59A	900,000	90,000	810,000	
		59B	850,000	85,000	765,000	
	특화평면 거실 아트월 업그레이드(400*800 포세린 타일 → 1,600*1,200 세라믹스톤)	59A	2,700,000	270,000	2,430,000	

● 특화평면 선택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내 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일	
특화평면	• 와이드 키친 주방특화평면 : 주방+침실3 → 주방펜트리+거실 조명형 장식장+안방 드레스룸 마감재 업그레이드 적용 : 주방 상판 + 벽면 세라믹스톤, 조명 업그레이드, 주방 고급 천정 리인조명, 주방 펜트리 시스템가구 및 센서등,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및 센서등, 빌트인 냉장고	59A	15,300,000	1,530,000	13,770,000	
	• 와이드룸 침실2,3 특화평면 : 침실2+침실3 → 침실 통합 + 드레스룸 마감재 업그레이드 적용 : 침실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및 시스템가구, 센서등	59B	4,400,000	440,000	3,960,000	

● 가전 추가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및 특화평면 선택시)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모델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 지정일	
공용욕실 스마트복합 환풍기	공용욕실 스마트복합환풍기	전타입	600,000	60,000	540,000	힘펠
빌트인 냉장고 + 냉장고장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4DOOR) + 비스포크 키친핏 김치냉장고(3DOOR) + 키친핏 전용 냉장고장 + 키친장	39A,59B	5,900,000	590,000	5,310,000	삼성
		59A,74	6,000,000	600,000	5,400,000	
		84A,B,C	6,300,000	630,000	5,670,000	
고급형 인덕션	3구 인덕션	전타입	1,110,000	111,000	999,000	삼성
고급형 빌트인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1,290,000	129,000	1,161,000	삼성
거실 월패드 홈넷 24인치	24인치 홈넷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코콤

● 무상선택품목

품 목	내 용	타입	비 고
키친 컬러테리어 색상 선택	H.J버건디 / 아이보리	59A, 74, 84A	확장시 선택가능
	H.J그린 / 아이보리	39A, 59B, 84B, 84C	

● 무상제공품목

품 목	타입	비 고
거실 복도장(소)	74, 84A	확장시 제공
빌트인 전기광파오븐	59A,B,74,84A,B,C	
실외기실, 세탁실 탄성코트	59A,B,74,84A,B,C	
세탁실 시스템선반	전타입	39A타입은 비확장도 제공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 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 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일 가격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상옵선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부산은행	101-2084-5012-03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 상기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IX 기타 계약자 안내 및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2026년 06월 예정(공사기간 38개월,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413대), 관리사무실 1개소, 놀이터 2개소, 경로당 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주차장 입구 레벨은 우수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도로보다 약간 높으며, 지하1층 차량 램프 높이는 2.7m,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지하1층은 2.3m 미만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3-101-0004100호	사백사십삼억구천칠백이십구만원 (44,397,290,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하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보증약관 제3조)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사항

구 분	내 용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또는 각 단지별 대지면적의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단지의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입주 이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중 현장여건의 변화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아트월, 소파우치, 창문열림방향, 외부 조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전 현장, 주변현황,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및 대지경계선 구간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p>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내외부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주변도로는 대관협의를 및 요청에 따라 도로 레벨, 차선수, 도로 폭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해당 주택재개발지역은 연산초등학교로 배정되며, 중학교 남학생은 연산중, 여학생은 연제중으로 배치 가능함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동명칭(동수)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당해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부지 외 기타부지(도로 등)는 해당 계획이 변경(조경계획, 부지의 용도, 사업계획 등) 될 수 있음 • 기타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 및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 및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구역내 별도 근린생활부지가 아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대지가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동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접근가능해야 함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9 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공용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4 조(가스계량기) 6 항에 따라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단지내 기부채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음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시공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PJT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시트 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PET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재질과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혹은 업체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제시될 수 있음 • 가구표면 및 창호, 마루재는 태양광의 노출에 따라 표면이 일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퍼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견본주택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아파트는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 모형, CG 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무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 평면특화 등의 유상/무상옵션이 추가로 표현되어 전시하였으나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 유상/무상옵션>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보관소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 쓰레기 보관소는 사용성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규격,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 입주민의 요구에 의한 위치이동은 불가)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마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과 입면 변경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포함) 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단지의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상품성, 기능,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경비실, 쓰레기/자전거 보관소,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 기타부대시설 등의 추가,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되는 도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음 • 대관협약,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사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지붕구조물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침실1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로 인하여 침실1 발코니 공간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하향식피난구의 오픈구의 위치는 층별 교차시공되어 층별로 다름 • 침실1 발코니에서 물 사용시, 하향식피난구 오픈구를 통해 아래 세대에 누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 책임이 아니며, 하자로 볼 수 없음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경계선에 인접한 구간은 고저차로 인하여 경사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수 있고, 단차부에 옹벽이 조성 되거나, 기존옹벽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대관요청,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로(차도, 보도), 옹벽선형 및 높이, 각종 옥외 시설물, 녹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잔디마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순환로, 쓰레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하부 시설물(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저수조 등)의 D.A(급기/배기), 배기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수증기 발생,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 단지출입구(보행자, 차량, 비상차량 등), 지하주차장램프(캐노피 포함)등과 인접한 주동 및 세대에는 전망간섭,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 캐노피 마감재, 위치, 색상, 돌출깊이는 도로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난간대의 재질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철제문, 방화문의 설치위치, 폭, 높이, 형태,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치는 공동으로 사용함 • 외부 PL창호가 유리난간이 설치되어짐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단지 레벨차이로 형성된 데크면에 각종 기계실, 전기실, 팬룸 등 부대복리시설의 환기를 위한 그릴 및 환기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및 지하주차장 지정 및 기초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및 현장 재차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말뚝기초→지내력기초 또는 지내력기초→말뚝기초) • 쓰레기 보관소는 본공사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과의 간섭 등으로 그 사이즈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동 지하1층 헬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상 인접한 세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준공 시 실측결과에 따라 단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시 인접세대는 채광, 조망, 환기가 불리해 질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중앙광장, 운동시설, 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동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39 A,B세대는 복도형으로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상 101동은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의 실외기가 조경공간에 설치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상가)에 인접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과 근생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103동은 아파트 부대시설(경로당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므로,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시설의 실외기가 인근에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인한 진동 소음, 또는 음식물 조리에 따른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거리가 상이하 • 103동 옥상에 고가수조가 설치됨 • 단지내 커뮤니티(골프연습장 등) 시설과 인접한 경우 시설 운영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동 주변으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시설(지하층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동통신실, 환풍, 저수조, 빗물저류조, 실외기실)과 당해 DA 주변에는 해당시설 가동시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DA의 위치 및 규모,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103동 세대 인근에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변에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소, 광장, 상가, 어린이집, 노인정 등이 설치되어 진동, 소음, 냄새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아파트 주변에는 저수조, 저류조, 펌프실, 발전기실, 환풍, 커뮤니티시설, 상가 등이 설치되어 진동, 소음, 냄새(매연)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주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나누기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정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공간 반자의 설치 유무,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폭과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양여단이 또는 외여단이가 적용됨 (동별로 적용여부가 상이하)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동 옥상(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이 배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간 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동마다 설치되는 용량 및 크기가 상이하) •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날씨에서는 옥상에 설치되는 안전난간대 등의 구조물에서 진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여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탑프레임, 옥상조형물의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탑프레임 및 옥상조형물의 형태/마감재/재질, 입면문양, 축벽조형물형태/마감재/재질, 축벽문양, 코어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형태/마감재/재질) 및 색채는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거실 전면에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Type 의 경우 국기계양대 설치는 불가함(단 39타입은 가능)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동 옥상에 전파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TV 공청 및 위성수신 안테나와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동 지하층 내 설비, 배관설치를 위한 PIT 공간이 설계되며 단지 내외부로 이동이 제한 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 • 승강기 설치의 신법을 적용하여 설치되며, 내외부 외장은 당사 설치기준에 따른다. ※ 속도: 1층~19층이하(105m/min), 20층~25층(120m/min) •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창호의 크기, 형태, 열림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창호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주동 지상 저층부 석재 마감재와 상이한 뽕칠마감이 적용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주변 대지와외 레벨차이로 인해 세대 전면에 옹벽, 사면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일조, 조망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설치되지 않음 • 주동 필로티 또는 1 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 보관소, 로비공간 등)은 공용시설물이며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재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옥외시설물 및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발코니 외부 창호(샤시)는 설치 또는 미설치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재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아파트 축벽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 등은 변경될수 있음 • 아파트 축벽 차별화 부분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위치별 금속마감 적용에 따른 눈부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등에 의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코아인근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부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 단지의 부대시설은 대지특성상 지하 또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은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뮤니티 모형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인테리어 계획, 색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는 미제공 품목(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버품 등)임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진입로는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함 (근생시설의 주차면은 위치가 정해져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에서 단지내 부대시설로의 접근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음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텃밭,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 처리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수목의 종류 및 규격, 위치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지장물과의 간섭 및 설계개념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전체적인 위치와 개소 및 시설내 개별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형태는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정면적(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 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수경시설의 형태 및 위치, 연출방향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연출에 따른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경시설은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DA/TL 등 건축구조물과 실외기 설치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 및 생활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시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경사면 발생에 따라 계단, 램프 등이 삭제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경사 처리에 따른 녹지 폭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의 각종 식재 및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특성에 따라 주차대수는 상이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4동 5.6.7라인의 지하1층 E/V홀은 단지 공용시설물(제연휀룸)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지하1층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층수는 경사지 특성상 동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 천장고는 차로 약 2.3m, 주차면 약 2.1m 정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보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음 • 지하 동출입구는 사용성, 상품성 개선을 위해 평면 및 입면 형태, 마감재 등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택배보관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택배보관함은 동별 설치되지 않음 • 택배차량은 지하1층만 제한적으로 진입가능하나, 차량충고는 2.3m 제한될 수 있음 • 부산시 전문위원회 심의시 의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의 종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주 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향후 인허가 진행상황 및 인근단지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 삭제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 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쪽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벽, 벽체(욕실벽, PD 를 포함한 비내력골조벽, 조적벽, 경량벽체 등)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중에 경량벽체, 비내력골조벽 또는 조적벽으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될 수 있음 • 욕실 당해층 배관은 적용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부 석고보드 벽체의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39타입을 제외한 모든평형의 침실 1 개소에는 부산시 전문위원회 심의시 의결한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테리어 마감(커튼박스 폭, 천장형 에어컨 설치시 설치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이 설치되는 침실(침실 1 개소)의 경우 커튼박스 폭이 다른 침실보다 넓게 시공되며, 당해 시스템 루버는 다른 침실로의 이동 설치가 불가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건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타입은 평면구조에 따라 워크인 수납공간 형태로 대체되어 제안될 수도 있음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위치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 장 길이 및 위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물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하부세대 비확장시 상부 세대 바닥 난방배관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됨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는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품질 개선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가구의 세부 사이즈 및 내부 구성 등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건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 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및 바닥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 제공여부는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내부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악세서리 제공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현관/복도 아트월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건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산정에서 제외됨
-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 각 세대 내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세대 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보일러, 환기시스템장비,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사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실시공사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주방 외부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 내의 간접등 위치 및 크기는 세대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 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의 공법이 건식공법이 습식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사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상옵선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책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 59B 타입의 와이드룸 패키지 선택 시 침실3 불박이장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선 금액에 포함되어있음 • 유상옵선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대 내 특수조명에 의해 가구 등의 마감재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음
<p>발코니/ 실외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 설치된 단차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동일한 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추세대/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세대 내부의 추가 단열재 설치 및 마감 두께 등의 이유로 법규상의 면적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다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선홍통은 세대내의 샤프트 내부로 이동될 수 있음 • 발코니 걸레받이 마감재는 방수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에 건조기 설치 시, 세탁선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난방 및 온수용이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발코니 바닥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형태,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환기시스템장비가 설치되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바닥드레인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함) • 단위세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 상부가 외기가 아닌경우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 상부로 욕실환기용 배관이 설치될 경우 천장마감재가 추가설치 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부위는 피난동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발코니 바닥과 하향식 피난구 설치부위 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발코니에서 물 사용 시, 오픈구로 인한 아래 세대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사 책임이 아니며 하자로 볼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의 높이와 창호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시 창호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세탁기/건조기 후면이나 측면에 위치할 경우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동해야할 수 있음 • 기본형 선택 세대가 입주 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청에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망입유리 설치 창호는 개폐 불가)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어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 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시 침실창, 거실창, 주방창은 일반 이중창과 개폐부위 유리난간대가 시공되며, 유리난간설치 세대는 이사등을 위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함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발코니샤시)는 미제공되며, 일반 철재 난간대가 설치됨 •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창호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상이하게 (창호 나누기 크기 변경 및 창호 프레임 추가 등)시공될 수 있음 • 창호 및 문 열림방향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도면상 열림방향이 상이할 경우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시 외부 PL 창호중 유리난간 미설치 부위의 창문은 고정되어 열리지 않음(단, 주방발코니 프로젝트창 제외) • 외부창호의 색상은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벽부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 됨 - 39A㎡,39B㎡ : 침실1,침실2 (2개소) - 59A㎡,59B㎡74㎡,84A㎡,84B㎡,84C㎡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기본제공 벽부형 냉매배관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 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 는 유상처리 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모델하우스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 대당 1 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 /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 분전반은 침실 설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설치기준: 팬트리 및 신발장 설치 불가) 기준이며, 현장 배치 검토에 의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 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위치 및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건조기 및 세탁기 2단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물비누통 및 배수구 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오버플로우 위치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위치 및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디퓨저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소방 법규에 따라 10 층 이하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1~2 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시공됨(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함)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 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 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렌지후드, 전열교환 환기설비 등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이 발생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흡선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 • 세대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전기쿱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쿱량 3.3kW 초과 전기쿱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 일부 아파트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난방 및 온수용이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단지의 설계변경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텃밭, 조경 시설, 포장, 무상귀속되는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단, 동별사용허가(부분사용준공) 임시사용승인(준공전 사용허가)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O(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O(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O(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O(적용)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 (다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일괄소등 스위치는 미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O(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 스위치를 설치함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O(적용)	세대 내에는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통신 감리
회사명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양기술단	대원포비스(주)
감리금액	1,006,809,000	462,443,636	315,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05-81-34332	214-81-57436	605-81-28078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3-1, 301호(연산동, 우리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법인등록번호	180171-0012495	180111-0602507

X	현장 및 견본주택 안내
----------	---------------------

견본주택	현장주소	문의전화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	051-861-7952	https://시청역해모로센티아.com

-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